#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
|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br>(2024.01.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br>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4.07.19.(금) | 24.07.29.(월) | 24.07.30.(화) | 24.07.31.(수) | 24.08.07.(수) | 24.08.08.(목)~<br>24.08.17.(토) | 24.08.19.(월)~<br>24.08.21.(수) |

## Ⅰ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br>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rteracc.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 O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O | | X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2024.01.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4.07.29.(월) | 24.07.30.(화) | 24.07.31.(수) | 24.08.07.(수) | 24.08.08.(목)~<br>24.08.17.(토) | 24.08.19.(월)~<br>24.08.21.(수)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52-7)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의 50%를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가 선 대납하여, 공급계약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재 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인지세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 인지세 납부 계좌번호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광주은행 | 1107-021-708809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1동 301호 홍길동 → 201301홍길동 / 202동 1701호 김철수 → 2021701김철수)
- 분양계약 체결일에 상기 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인지세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동주택과 - 20852호(2024.07.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0-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77세대**
**[특별공급 216세대(기관추천 42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77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3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2024000356 | 01 | 072.9532 | 72 | 72.9532 | 23.2543 | 96.2075 | 51.8819 | 148.0894 | 41.0902 | 80 | 8 | 8 | 14 | 2 | 7 | 39 | 41 | 4 |
| | 02 | 084.9463A | 84A | 84.9463 | 26.9648 | 111.9111 | 60.4110 | 172.3221 | 47.8452 | 228 | 22 | 22 | 41 | 6 | 20 | 111 | 117 | 10 |
| | 03 | 084.9454B | 84B | 84.9454 | 27.3583 | 112.3037 | 60.4105 | 172.7142 | 47.8447 | 125 | 12 | 12 | 22 | 3 | 11 | 60 | 65 | 5 |
| | 04 | 097.4833 | 97 | 97.4833 | 30.7734 | 128.2567 | 69.3269 | 197.5836 | 54.9066 | 22 | - | 2 | - | 1 | - | 3 | 19 | 1 |
| | 05 | 116.8872 | 116 | 116.8872 | 36.0132 | 152.9004 | 83.1263 | 236.0267 | 65.8356 | 22 | - | 2 | - | 1 | - | 3 | 19 | 1 |
| | 합 계 | | | | | | | | | 477 | 42 | 46 | 77 | 13 | 38 | 216 | 261 | 21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 72.9532 | 84.9463A | 84.9454B | 97.4833 | 116.8872 |
|---|---|---|---|---|---|
| 사업승인 시 주택표기 | **72** | **84A** | **84B** | **97** | **116** |
|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 **72** | **84A** | **84B** | **97** | **116** |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 분(약식표기) | | 72 | 84A | 84B | 97 | 116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4 | 2 | – | – | 7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4 | 2 | – | – | 7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5 | 2 | – | – | 9 |
| | 중소기업 근로자 | 2 | 4 | 3 | – | – | 9 |
| | 장애인 | 2 | 5 | 3 | – | – | 10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8 | 22 | 12 | 2 | 2 | 4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4 | 41 | 22 | - | - | 7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2 | 6 | 3 | 1 | 1 | 13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7 | 20 | 11 | - | - | 38 |
| **합 계** | | 39 | 111 | 60 | 3 | 3 | 21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주택형 (약식 표기) | 동 (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 (30%) |
|---|---|---|---|---|---|---|---|---|---|---|---|---|---|---|---|---|
| | | | | | | | | 1차 | 2차 | 1회차(10%) | 2회차(10%) | 3회차(10%) | 4회차(10%) | 5회차(10%) | 6회차(1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30일 이내 | 2025.01.20. | 2025.06.20. | 2025.10.20. | 2026.03.20. | 2026.08.20. | 2026.12.21. | 입주지정일 |
| 72 | 204동 1,2,3,4호 라인 | 2층 | 4 | 112,200,000 | 327,800,000 | - | 440,000,000 | 10,000,000 | 3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32,000,000 |
| | | 3층 | 4 | 113,985,000 | 333,015,000 | - | 447,000,000 | 10,000,000 | 3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134,100,000 |
| | | 4층 | 4 | 115,260,000 | 336,740,000 | - | 452,000,000 | 10,000,000 | 3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135,600,000 |
| | | 기준층 | 68 | 116,535,000 | 340,465,000 | - | 457,000,000 | 10,000,000 | 35,700,000 | 45,700,000 | 45,700,000 | 45,700,000 | 45,700,000 | 45,700,000 | 45,700,000 | 137,100,000 |
| 84A | 201동 1,2,3,4호 202동 1,2,5호 203동 2,5,6호 라인 | 1층 | 4 | 126,990,000 | 371,010,000 | - | 498,000,000 | 10,000,000 | 3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149,400,000 |
| | | 2층 | 10 | 130,560,000 | 381,440,000 | - | 512,000,000 | 10,000,000 | 4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153,600,000 |
| | | 3층 | 10 | 132,600,000 | 387,400,000 | - | 520,000,000 | 10,000,000 | 4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156,000,000 |
| | | 4층 | 10 | 134,130,000 | 391,870,000 | - | 526,000,000 | 10,000,000 | 4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57,800,000 |
| | | 기준층 | 194 | 135,405,000 | 395,595,000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84B | 202동 3,4호 203동 1,3,4호 라인 | 1층 | 1 | 126,225,000 | 368,775,000 | -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 | 2층 | 5 | 129,540,000 | 378,460,000 | - | 508,000,000 | 10,000,000 | 4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152,400,000 |
| | | 3층 | 5 | 131,835,000 | 385,165,000 | - | 517,000,000 | 10,000,000 | 4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155,100,000 |
| | | 4층 | 5 | 133,110,000 | 388,890,000 | - | 522,000,000 | 10,000,000 | 4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156,600,000 |
| | | 기준층 | 109 | 134,640,000 | 393,360,000 | - | 528,000,000 | 10,000,000 | 4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158,400,000 |
| 97 | 201동 5호 라인 | 2층 | 1 | 140,778,200 | 411,110,727 | 41,111,073 | 593,000,000 | 10,000,000 | 4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 | 3층 | 1 | 143,152,200 | 418,043,455 | 41,804,345 | 603,000,000 | 10,000,000 | 5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180,900,000 |
| | | 4층 | 1 | 144,576,600 | 422,203,091 | 42,220,309 | 609,000,000 | 10,000,000 | 5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 | | 기준층 | 19 | 146,238,400 | 427,056,000 | 42,705,600 | 616,000,000 | 10,000,000 | 5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184,800,000 |
| 116 | 201동 6호 라인 | 1층 | 1 | 164,280,800 | 479,744,727 | 47,974,473 | 692,000,000 | 10,000,000 | 5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207,600,000 |
| | | 2층 | 1 | 168,791,400 | 492,916,909 | 49,291,691 | 711,000,000 | 10,000,000 | 6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213,300,000 |

| | | | | | | | | | | | | | | | | |
|---|---|---|---|---|---|---|---|---|---|---|---|---|---|---|---|---|
| | | 3층 | 1 | 171,640,200 | 501,236,182 | 50,123,618 | 723,000,000 | 10,000,000 | 6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216,900,000 |
| | | 4층 | 1 | 173,302,000 | 506,089,091 | 50,608,909 | 730,000,000 | 10,000,000 | 63,000,000 | 73,000,000 | 73,000,000 | 73,000,000 | 73,000,000 | 73,000,000 | 73,000,000 | 219,000,000 |
| | | 기준층 | 18 | 175,201,200 | 511,635,273 | 51,163,527 | 738,000,000 | 10,000,000 | 6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221,400,000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내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 계약자에게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노동조합의 파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Ⅳ 특별공급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br>**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무주택<br>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br>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td></tr>
</table>

| | |
|---|---|
|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br>■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br>■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br>■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과<br>■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br>■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br>■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r>-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r>■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br>■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br>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br>(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td></tr>
</table>

##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7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r>■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br>■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br>(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br>(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br>(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br>(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br>※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br>※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br>■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br>-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td></tr>
</table>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7.19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r>-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8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r>-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br>※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r>-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br>-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br>*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br>*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본 주택에 청약 불가함)<br>*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br>■「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r>*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br>**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br>■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br>■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br>(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br>(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br>(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br>(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td></tr>
</tabl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7.19.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br>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br>(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 | | |
|---|---|---|
| | 인정 적용기준 |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br>-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 비고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r>-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br>-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민영주택)<br>공고단지**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 | | |
|---|---|---|
| **청약연습** |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4.08.07.(수) ~ 2024.08.16(금)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r>-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4.08.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구분 |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 장소 | 제출 방법 |
|---|---|---|---|
|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 2024.08.08.(목).~2024.08.17.(토) (10일간)<br>(10:00~17:00)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52-7<br>춘천 아테라 에듀파크 견본주택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 2024.08.08.(목).~2024.08.17.(토) (10일간)<br>(10:00~17:00) | | |

※ 상기 서류제출 기간은 예정사항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이하 동일) 자격 검증 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신청용**(본인 발급분 / 대리인 발급분 불가)**<br>※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자한 경우 본인 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 | | | | | |
|---|---|---|---|---|---|
|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br>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주민등록표등본<br>(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br>(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청약 자격요건 및 해외 장기 체류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br>및<br>부양가족 |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배우자 :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O | 단신 부임 입증서류 | 본인 및<br>직계존·비속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br>- 국내 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 내역<br>※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O | 주민등록표등본<br>(상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
| | | O | 주민등록표초본<br>(상세) | 배우자<br>및<br>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br>-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br>-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배우자/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br>※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인정<br>※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 | |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직계비속 |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br>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인정 불가) 제출<br>※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br>※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O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인정 불가) 제출<br>※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 |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임신 중인 경우)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O | 부동산 소유 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br>(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분리세대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br>(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O | | 소득 증빙 서류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 | O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br>-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처: 해당 직장 및 세무서)<br>-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발급처:세무서)<br>(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있는 자 포함)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인정 불가) 제출<br>※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임신 중인 경우)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O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br>( 등기사항전부증명서<br>,<br>무허가건물확인서,<br>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br>,<br>기타 무주택자 증명서류,<br>당첨 사실 소명 서류 등) |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 무허가건물[종전「건축법」(법률 제7696호 개정 이전 법률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의 확인서 또는 민원 회신 등 |
| | | O | | | 소형,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O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O |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제3자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 본인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신청용(본인 발급분 / 대리인 발급분 불가)<br>※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 | O | | 인감도장 | 본인 (청약자) | 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 | | | | |
|---|---|---|---|---|---|
| | o | | 위임장 | 본인<br>(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o |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br>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 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br>※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br>('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해당 직장<br>-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br>- 해당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 -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신규 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br>- 계속 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원, 위촉증명서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 - 해당 직장<br>- 세무서<br>- 홈텍스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사본)<br>-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br>-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세무서<br>- 국민연금 관리공단 |
| | **신규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사본)<br>-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br>-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국민연금 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br>-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 세무서<br>- 등기 |

| | | | |
|---|---|---|---|
| | **보험 모집인 /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 급여명세표(직인 날인)<br>-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 세무서<br>-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br>-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 - 해당 직장<br>-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br>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br>※ 전년도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br>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br>※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세무서<br>- 해당 직장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해당 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 재직증명서<br>-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해당 직장<br>- 세무서<br>- 국민건강보험 (공단) |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br>-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 납세 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br>-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 세무서<br>- 해당 직장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자격 검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서류구분 | 증빙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br>ⓑ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b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br>ⓒ 행정복지센터 |
| | 추가 (해당자) |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br>ⓔ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br>ⓕ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 ⓓ,ⓔ 행정복지센터<br>ⓕ 위택스(www.wetax.go.kr) |

| | | | |
|---|---|---|---|
| | | 인쇄하여 제출 | |
|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없는 경우 | 필수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이하 동일) 자격 검증 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신청용**(본인 발급분 / 대리인 발급분 불가)**<br>※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자한 경우 본인 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br>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청약 자격요건 및 해외 장기 체류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세대원 |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
| **가점제 추가서류**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
|---|---|---|---|---|---|
| | | O |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직계존속 | 관계 확인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br>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O |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br>※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청약통장<br>가입확인용<br>순위확인서 |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O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br>( 등기사항전부증명서,<br>무허가건물확인서,<br>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br>기타 무주택자 증명서류,<br>당첨 사실 소명 서류 등) |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 무허가건물[종전「건축법」(법률 제7696호 개정 이전 법률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의 확인서 또는 민원 회신 등 |
| | | O | | | 소형,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O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 | O |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제3자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 본인(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신청용(본인 발급분 / 대리인 발급분 불가)<br>※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 | O | | 인감도장 | 본인(청약자) | 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 O | | 위임장 |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O |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br>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현장 접수) 자세한 서류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의심 시 사업주체는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자 통보 예정)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및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당첨자 계약 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br>(특별공급 / 일반공급) | 24.08.19.(월) ~ 24.08.21.(수)<br>(3일간, 10:00 ~ 16:00) |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 견본주택<br>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52-7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본인계약시** | O | | 계약금 입금<br>증빙서류 | 계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br>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자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br>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br>**자격검증 서류 제출시 제출한 경우 제외** |
| | O | | 인감도장 | 계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 | O | | 신분증 | 계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br>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정부수입인지<br>(종이문서용) | - |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공고 내 단지유의사항 – 정부수입인지(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참조<br>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가 선 대납하여, 공급계약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할 예정 |
| | O | | 주택취득자금 조달<br>및 입주계획서 | 해당자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 | | O | 당첨유형별 입주<br>대상자 자격 검증<br>서류 일체 | 계약자 |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 |
| | | O | 적격 여부 확인을<br>위해 요구하는<br>서류(서명자료) |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제3자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br>(위임용) | 계약자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br>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 불가함** |
| | O | | 인감도장 | 계약자 |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br>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 O |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br>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위임장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r>견본주택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분양대금 납부 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br>(계약금, 중도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708809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1차,2차 계약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모든 책임은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및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 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미인지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에서 중도금 대출 및 추가선택품목 등 일정에 대한 안내를 개인의 사유(수신거부, 차단 등)로 확인 불가 시 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 및 금융기관에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br>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br>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br>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br>**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br>**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br>**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br>**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일 |
| 72 | 16,000,000 | 1,600,000 | 1,600,000 | 12,800,000 |
| 84A | 19,000,000 | 1,900,000 | 1,900,000 | 15,200,000 |
| 84B | 19,000,000 | 1,900,000 | 1,900,000 | 15,200,000 |
| 97 | 21,000,000 | 2,100,000 | 2,100,000 | 16,800,000 |
| 116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공급가와 별도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시설 · 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동등 수준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류,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와 확장세대의 실외기실은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와 확장세대의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 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천장 크기의 감소, 조명의 상태와 변경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708815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301홍길동 / 102동 1701호 김철수 → 1021701김철수)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 입금계좌가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X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도산 기타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박스 위치 및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와 실내기 용량은 제조사 설계 기준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타입별 면적에 따른 용량 차이로 인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응축수 배수를 위하여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 유상옵션 품목은 주택형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 용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금액은 옵션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설비, 마감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패키지 옵션 선택시 독립형 후드가 설치되며 주방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다용도실내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용 가스배관만 시공이 됩니다.)
- 식기세척기는 기본설치되며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 패키지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상세**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품목 | 제품명 | 해당 타입 | 선택안 | | 옵션금액 | 납부일정 | | | 비고 |
|---|---|---|---|---|---|---|---|---|---|---|
| | | | | | | | 계약금 10%(계약시) | 중도금 10% (2025..01.20.) | 잔금 80% (입주예정일) | |
| 1 | 시스템 에어컨 | 삼성전자 | 72 | 선택1 | 거실+침실1 (2) | 3,200,000 | 320,000 | 320,000 | 2,560,000 | 일반형 |
| | |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 84A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3)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 | |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 7,000,000 | 700,000 | 700,000 | 5,600,000 | |
| | | | 84B | 선택1 | 거실+침실1 (2)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 |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 | | | 97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3)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 | |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 7,200,000 | 720,000 | 720,000 | 5,760,000 | |
| | | | 116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3)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 | |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 | 72 | 선택1 | 거실+침실1 (2) | 3,500,000 | 350,000 | 350,000 | 2,800,000 | 공기청정형 |
| | |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 6,500,000 | 650,000 | 650,000 | 5,200,000 | |
| | | | 84A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3) | 5,300,000 | 530,000 | 530,000 | 4,240,000 | |
| | | |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 7,700,000 | 770,000 | 770,000 | 6,160,000 | |
| | | | 84B | 선택1 | 거실+침실1 (2) | 3,700,000 | 370,000 | 370,000 | 2,960,000 | |
| | |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 6,500,000 | 650,000 | 650,000 | 5,200,000 | |
| | | | 97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3) | 5,200,000 | 520,000 | 520,000 | 4,160,000 | |
| | | |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 | | | 116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3) | 5,300,000 | 530,000 | 530,000 | 4,240,000 | |
| | | |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 9,300,000 | 930,000 | 930,000 | 7,440,000 | |
| 2 | 천장형 제습기 | 삼성전자 (AY047BA1SBA) | 전타입 | 드레스룸 |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3 | 냉장고+김치냉장고 | BC1K2AAC BC1F2AA | 72 | 선택1 | LG Objet (3도어)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 | | 84A | |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

| | | | | | | | | | | |
|---|---|---|---|---|---|---|---|---|---|---|
| | | BC1L2AA | 84B | |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 | | 97 | |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 | | 116 | | | 6,100,000 | 610,000 | 610,000 | 4,880,000 | |
| | | RQ34C78(9)45AP<br>RZ34C78(9)65AP<br>RR40C78(9)95AP | 72 | 선택2 | 삼성 Bespoke (3도어)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 | | 84A | |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 84B | |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 | | 97 | |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 | | 116 | |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 | BC4S1AA1<br>BC3K1AA1 | 72 | 선택3 | LG Objet (4+3도어) | 7,700,000 | 770,000 | 770,000 | 6,160,000 | |
| | | | 84A | | | 7,900,000 | 790,000 | 790,000 | 6,320,000 | |
| | | | 84B | | | 7,700,000 | 770,000 | 770,000 | 6,160,000 | |
| | | | 97 | | | 7,700,000 | 770,000 | 770,000 | 6,160,000 | |
| | | | 116 | | | 7,700,000 | 770,000 | 770,000 | 6,160,000 | |
| | | RF60C90R2AP<br>RQ33C74E1AP | 72 | 선택4 | 삼성 Bespoke (4+3도어)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 | | 84A | |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 | | | 84B | |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 | | 97 | |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 | | 116 | |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4 | 전기오븐 | 삼성전자 | 전타입 | NQ50T8539BK |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 | LG전자 | | MZ941CLCAT |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5 | 현관 중문 | | 전타입 | 1FIX + 2 DOOR 3연동 |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6 | 바닥특화 | | 72 | 선택1 | 광폭 강마루(전실) | 500,000 | 50,000 | 50,000 | 400,000 | |
| | | | 84A | |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 | | | 84B | |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 | | | 97 | |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 | | | 116 | |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 | | 72 | 선택2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광폭 강마루(침실))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84A |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84B |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97 | |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 | | 116 | |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7 | 가변공간옵션 | | 116 | 알파룸 + 슬라이딩도어 + 주방장식장 + 현관창고확장 | | 6,600,000 | 660,000 | 660,000 | 5,280,000 | |
| 8 | 주방마감재<br>(주방 벽/상판 마감) | | 72 | 선택1 |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 LED조명 | 2,900,000 | 290,000 | 290,000 | 2,320,000 | |
| | | | 84A | |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 | | 84B | |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 | | | 97 | |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 | | 116 | | | 2,900,000 | 290,000 | 290,000 | 2,320,000 | |
| | | | 72 | 선택2 | 세라믹타일 + 상부장 하부 LED조명 | 4,600,000 | 460,000 | 460,000 | 3,680,000 | |
| | | | 84A | |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 | | 84B | | | 4,600,000 | 460,000 | 460,000 | 3,680,000 | |
| | | | 97 | | | 5,100,000 | 510,000 | 510,000 | 4,080,000 | |
| | | | 116 | |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 9 | 주방장식장 | | 72 | 아일랜드 결합형 장식장 |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 84A | 독립형 장식장 |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
| | | | 84B | 아일랜드 결합형 장식장 |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 97 | 아일랜드 결합형 장식장 |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 116 | 독립형 장식장(가변공간 선택시 선택 불가) |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
| 10 | 수납패키지 (드레스룸 선반) | | 72 | 선택1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br>+ 화장대 분리형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84A | |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 | | 84B | |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 | | | | | | | | |
|---|---|---|---|---|---|---|---|---|---|
| | | 97 | |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 | 116 | |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
| | | 72 | 선택2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br>+ 화장대 통합형 | 3,200,000 | 320,000 | 320,000 | 2,560,000 | |
| | | 84A | |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 | | 84B | |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 | | 97 | |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116 | | | 4,300,000 | 430,000 | 430,000 | 3,440,000 | |
| 11 | 거실패키지 | 72 | 선택1 | 주방장식장 미선택시<br>① 아트월 : 세라믹타일<br>② 시트판넬+가구판넬<br>③ 복도1면, 소파뒷벽(픽처레일)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84A | |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 | 84B | |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 | 97 | |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116 | |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 | | 72 | 선택2 | 주방장식장 선택시<br>① 아트월 : 세라믹타일<br>② 시트판넬+가구판넬<br>③ 복도1면, 소파뒷벽(픽처레일)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84A | | | 3,200,000 | 320,000 | 320,000 | 2,560,000 | |
| | | 84B | |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
| | | 97 | | | 7,000,000 | 700,000 | 700,000 | 5,600,000 | |
| | | 116 | | | 4,500,000 | 450,000 | 450,000 | 3,600,000 | |
| 12 | 조명패키지 | 72 | ①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라인조명(직부등 삭제)<br>② 거실(아트월면) 단천장 + 간접조명<br>③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 | 84A | |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 | | 84B | |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 | 97 | | | 2,100,000 | 210,000 | 210,000 | 1,680,000 | |
| | | 116 | |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13 | 욕실 스타일업 (공용) | 72 | ① 욕실벽, 욕조에이프런 : 포세린타일 (600*600)<br>② 수납형 욕조수전,<br>③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br>④ 복합환풍기 |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 | 84A | |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 | 84B | |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 | 97 | |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 | 116 | |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 14 | 욕실 스타일업 (부부) | 72 | ① 욕실벽 : 포세린타일 (600*600)<br>② 샤워부스 흑니켈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br>③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br>④ 복합환풍기 |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 | 84A | |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 | 84B | |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 | 97 | |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 | 116 | |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 15 | 주방패키지 | 72 | 선택1 | ① 주방벽, 상판 마감 변경 : 엔지니어드스톤<br>② 유리플랩장 (매립형 상하부 조명)<br>③ 하부장 LED 라인 조명<br>④ 독립형 후드 | 6,100,000 | 610,000 | 610,000 | 4,880,000 | |
| | | 84A | | | 6,700,000 | 670,000 | 670,000 | 5,360,000 | |
| | | 84B | |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97 | | | 8,300,000 | 830,000 | 830,000 | 6,640,000 | |
| | | 116 | | | 6,800,000 | 680,000 | 680,000 | 5,440,000 | |
| | | 72 | 선택2 | ① 주방벽, 상판 마감 변경 : 세라믹타일<br>② 유리플랩장 (매립형 상하부 조명)<br>③ 하부장 LED 라인 조명<br>④ 독립형 후드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84A | |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
| | | 84B | | | 7,100,000 | 710,000 | 710,000 | 5,680,000 | |
| | | 97 | | | 9,700,000 | 970,000 | 970,000 | 7,760,000 | |
| | | 116 | |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금 납부 계좌**

| 분양대금 납부 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627376 |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추가 유상옵션 선택품목 공급계약은 시행수탁자와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301홍길동 / 102동 1701호 김철수 → 1021701김철수)
- 추가 유상옵션 선택품목비는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유상옵션 선택품목비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유상옵션 선택품목비 입금계좌가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Ⅺ 사업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 | | 내용 |
|---|---|---|
| 공통<br>사항 | 일반<br>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br>•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r>•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당사자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br>•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br>•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br>•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br>•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br>•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br>• 본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본 공동주택 인근에 도로, 신축공사 등 기타시설이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환경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br>• 단지 서측 및 북측 도시계획도로 등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실시 주체 변경 및 형태변경 또는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 레벨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통 될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br>•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추후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비확장(기본형)세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br>• 하자판단기준은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을 우선합니다.<br>•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일부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진행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계약체결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평면도, 견본주택 사전고지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br>• 본 아파트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202, 203, 204동 옥상층 및 202, 204동 지하1층 PIT 등에 설치됩니다. 단,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br>• 건축물의 색상 등의 색체계획은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등 심의도서, 인.허가 서류 등에 따라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모형이나 홍보물(CG) 등의 색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인허가 |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br>•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br>•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br>•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br>•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br>(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br>•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br>•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br>•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옥상 난간 위치 및 형태,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과정,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br>•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아파트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br>•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사전 분양 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등),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아파트 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부지 및 시공 현황과 측량 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해당 주관사 또는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br>•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 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단지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주변<br>현황 | • 본 아파트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br>•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201동 북측 10m도로 지하에 소형오수펌프장이 매설될 예정이며, 해당 도로에 인접한 단지내 인도에 배전반과 환기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아파트 서측에는 만천로 약 20m와 만천천 및 만천양지길이 인접해있고, 북측에는 약 10m 정도의 진입도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br>• 아파트 북측으로 춘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아파트 (29층), 남측으로 만천초등학교 및 상가(5층), 동측으로는 주택(3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br>• 도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차량 출입구는 두 개소로 설치되며, 사업지 북측 약10m도로 주출입구와 서측 만천양지길 약10m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현장 여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배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 (만천초등학교 등)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설치된 기존 옹벽 및 난간 등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은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본 사업장의 최초모집공고 및 계약서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br>• 주변현황은 사업 진행 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 교육 |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당 사업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만천초등학교(예정)입니다.<br>(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학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초등(중)학교 : 강원특별자치도춘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gwcce.gwe.go.kr)] 문의<br>- 고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문의 |
| | 시설계획 | •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br>•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br>•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br>• 입주 후 주차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발생되는 다툼 등의 문제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아파트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br>• 현관 등의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br>•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해당 시설에 위치한 인접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수 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201동 인근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냄새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br>• 주출입구 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램프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인접한 실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br>• 주동 및 부대시설의 점자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 형태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아파트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br>• 아파트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br>•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br>• 아파트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아파트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생활폐기물보관소(재활용보관시설 등), 수목,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지상1층 및 지하1~2층 진입홀 및 지상층승강기 홀 크기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br>• 1층 출입구 부분에 생활폐기물보관소(재활용보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서는 악취가 발생할수 있으며, 주출입구 통행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조경 식재 및 휴게, 놀이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열선시설, 통신 |

| | | |
|---|---|---|
| | | 시설물, 공용부환기설비, 수목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r>• 문주 및 경비실과 조경시설물이 설치되는 일부세대 및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지붕이 설치되는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옥외 엘리베이터, 옥외계단이 설치되는 인근세대는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남측 만천양지길, 만천초등학교 인접도로와 만나는 출입구는 보행자전용출입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br>• 지하1층~지하2층 동출입구 인근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위치 및 출입문 방향, 설치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미지, 계획도는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세대창고 배정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br>• 204동 인근 선큰(지하 부대복리시설계획) 및 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및 분진,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br>• 스프링클러 배관 및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br>• 단지내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br>• 204동 하부 필로티가든이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br>• 204동 하부 필로티가든에 표현된 마감(바닥, 벽, 천장) 및 집기비품, 조경표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 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건축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놀이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은 분양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br>•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관련 시설물(수목·시설물·조경시설·포장·기부채납 구간 등) ,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공법 ,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br>•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조경시설/포장의 색채, 재질 및 위치, 식재의 수종 및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br>•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br>•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br>•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생활폐기물보관소는 단지내 4개소가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생활폐기물보관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br>• 지하수의 상향수압 검토결과에 따라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고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br>• 구조기술사와 감리감독의 안전확인 후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및 기초의 형식, 규격,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내 공용부에 설치된 공용부 창호는 동마다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입면, 색체 |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인허가 기관의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br>•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경관조명, 측면 로고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br>• 주동 일부 BI로고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세대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문주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 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부대복리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 3개 별동으로 보육시설, 게스트하우스,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대시설 지상1층에는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경로당이 위치하고, 지하1층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br>•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및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br>• 아파트에 설치 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br>• 각종 홍보물 상의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 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건축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br>• 부대복리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게스트하우스관련 분양대상물 CG에 표현된 집기비품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근접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br>• 1층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공사여건에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춘천시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은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 | 공용설비<br>및<br>시스템 |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아파트 내 주차장 CCTV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br>•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 및 기능은 변경 될 수 있음.)<br>•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는 공용부에서 사용되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br>• 아파트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휀룸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br>• 세대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추후 협의에 따라 지역난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 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br>• 아파트 공용부에 통신사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아파트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착공 후 입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각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 | | |
|---|---|---|
| | |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입찰을 통해 추후 브랜드가 선정되며 브랜드는 동일합니다.<br>• 아파트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장애 및 빛산란(빛공해), 소음(풍절음) 등에 의한 사생활과 환경권이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 | 주차장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br>• 무인택배함은 관리사무소 인근에 1개소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지하1층은 차로 유효높이 2.7m, 지하2층 2.3m로 되어 있어 탑차 택배차량의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기준에 맞춰 설치되며,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br>•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댓수에 포함되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시 해당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br>• 지상주차장 인근 키즈스테이션이 설치 됩니다.<br>•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br>•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br>•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지붕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단지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 상부에 낙엽 등이 쌓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단지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동의 전•후 측벽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br>• 일부 주차구역은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 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 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근린생활시설 인근 지상에 설치되며, 주차통제관리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 | 근린생활시설 | • 본 아파트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br>•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진출 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인접한 201동은 이동 동선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근린생활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일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근린생활시설 인근 지상에 설치되며, 주차통제관리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 | | |
|---|---|---|
| 단위<br>세대 | 평면 |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br>•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br>•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와 창호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br>•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단, 주방 창문의 경우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좌우대칭형 평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향(오른쪽)이 열리는 창문으로 설치되며 추후 인허가 및 시공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세대 내부 실시공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 허용 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br>•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입주후 과다한 습도 유지와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용시 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br>• 아파트 단위세대 기본 천장고는 2.3m(거실, 침실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상이합니다. 또한,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단열재, 층간차음재, 단열창호의 종류 및 성능은 법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br>•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 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br>• 빌트인 주방가전(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br>• 단위세대 내 또는 공용부의 비내력 벽체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실별로 조적 또는 경량벽체,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각 세대별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br>•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br>•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됨.<br>•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br>•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음.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br>• 각 동별 코어에 엘리베이터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대 현관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내부벽체는 일부 건식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됨으로 중량물의 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중량물 벽면 부착시 보강조치 필요하고 경량물 부착시 석고보드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합니다.) |
| | 발코니<br>/실외기실 |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br>•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br>•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및 브랜드, 창틀,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창호공간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와 확장세대의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br>• 각 세대의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실외기실에는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실외기실 그릴의 턱 높이가 있어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br>• 실외기실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다용도실의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시켜야 합니다.<br>• 세대 내부 다용도실에 설비배관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br>•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치 할 수 없습니다.<br>• 화재 등 유사시 계단이용 피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여야합니다.<br>•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누수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 설치, 천장에는 환기장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상부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위치는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시공됩니다.<br>• 각 동 최하층 세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대신하여 완강기 또는 피난용발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인·허가 과정에서 필로티 상부세대(저층부), 실외기실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그릴창 디자인, 형태, 사이즈,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될 수 있고,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한 후 홍보관에 전시하였고(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욕실 |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br>•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br>• 본공사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창호<br>옥외공간 |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샤시 (발코니 등)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가구<br>및<br>마감재 | • 세대 내부 가구(각종 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br>•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br>•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br>•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br>• 인조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 주방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br>•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대리석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br>•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br>• 거실/주방바닥 타일 유상옵션 선택시 줄눈사이는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루 선택시와 다르게 아래층 층간소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br>•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br>• 타일줄눈은 의장상 OPEN줄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전기기계설비 | • 일부 단위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br>•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를 예상하고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예상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br>•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분전반은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의 전기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악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br>•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되며, 기타 침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br>•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설치)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전원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 매립배관 및 전기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br>•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욕조 하부, 샤워부스 하부 제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br>•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br>•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br>• 욕실과 발코니 배수배관이 층하배관 시스템 이므로 인접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br>• 세대 내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반은 관련 기준에 따라 안방, 침실, 복도 등의 벽면, 도어 후면 등 점검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 노출 설치 됩니다. (세대 타입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br>• 세대 내 전동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br>•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2+하이라이트1)이 기본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됩니다. 단, 주방패키지 옵션 선택시 독립형 후드가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다용도실내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용 가스배관만 시공이 됩니다.) |
| | 견본주택 / 홍보물 | • 견본주택에는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br>•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당사자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적용된 형태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마감재 / 가구형태 / 가전 / 평면형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별도 분양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내 모형을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아파트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아파트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84A, 84B)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72, 97, 116)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아트월 등 포함), 벽체 아트월 부착 소품,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br>•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br>•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소화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br>•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스피커, 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br>• 기본형 주방상부장 내의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옵션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배관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악세서리류, 냉매배관박스,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의 주방패키지(주방상판마감재 + 상부 유리플랩장 + 독립식 후드) 선택 시 주방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다용도실내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용 가스배관만 시공이 됩니다.)<br>•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br>•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Ⅺ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 사전방문 실시**

- 주택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방문기간 및 방법 등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7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 : 2.7m확보
- 지하주차장 차로유효높이 :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건축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비고 |
|---|---|---|---|---|---|
| 회 사 명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씨에이파트너스 | |
| 감리금액 | 2,276,785,000 | 519,458,646 | 192,500,000 | 148,114,493 | |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 분 | 등 급 |
|---|---|
| 내진능력 | Ⅶ-0.170g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또는 |

| | | | |
|---|---|---|---|
| | |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92024-101-0004300호 | 일금 일천칠백육십칠억일천사백삼십만원정<br>(₩176,714,3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블루키파트너스,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금호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블루키파트너스가 부담하

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블루키파트너스와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블루키파트너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블루키파트너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블루키파트너스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주)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 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식회사 블루키파트너스 | 금호건설 주식회사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br>(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1길 6-6(칠전동), 1층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 140111-0087997 | 110111-0134877 |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 견본주택 약도 | 안내 |
|---|---|
| **춘천시 동면 만천리 552-7** | **분양문의 : 033-261-0543**<br><br>**· 운영시간 : 10:00 ~ 18:00**<br><br>**·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br>**※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 **홈페이지 주소**<br><br>**https://arteracc.co.kr/**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당사자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목록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